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0
----------	------

제출일자 : 2024. 9. 30.

제 출 자 : 달성군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정함
(안 제12조)
- 나. 그 밖에 용어 등 정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붙임)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8. 30. ~ 9. 19.)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소장 및 지소장)”을“(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소장”을 각각 “보건지소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타 법령에 의한”을 “다른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에 의거”를 “별표 2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장 및 지소장)</p> <p>① ~ ② (생략)</p> <p>③ <u>지소장</u>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u>지소장</u>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로사로 하여금 <u>지소장</u>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u>보건소장</u> 및 <u>보건지소장</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보건지소장</u>은 ----- ----- . 다만, <u>보건지소장</u>----- ----- <u>보건지소장</u>----- ----- .</p>
<p>제7조(<u>진료비</u>)<u>진료비는 방문당수가</u> <u>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u> <u>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u> <u>를 말한다.</u></p>	<p><삭제></p>
<p>제10조(<u>타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u> <u>수수료</u>) (생략)</p>	<p>제10조(<u>다른 법령에 따른</u>----- -----) (현행과 같음)</p>
<p>제11조(<u>기타</u> 진료비 및 수수료)</p> <p>① <u>기타</u>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p>	<p>제11조(<u>그 밖의</u> 진료비 및 수수료)</p> <p>① <u>그 밖의</u> ----- ----- ----- .</p> <p>② ----- -----별표 3-----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u>【별표 2】</u>에 의거 징수한다.</p> <p>[별표 2] ○ 증명 발급 수수료 (제12조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준</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1. 건강 진단서</td> <td>1통</td> <td>500</td> </tr> <tr> <td>2. 운전면허 적성검사</td> <td>1통</td> <td>500</td> </tr> <tr> <td>3. 의료기록사본 (x-선)발급</td> <td>1통</td> <td>3,000</td> </tr> <tr> <td>4. 증명서 재(추가)발급</td> <td>1통</td> <td>500</td> </tr> <tr> <td>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td> <td>1통</td> <td><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서 정한 수수료</u></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금 액	1. 건강 진단서	1통	500	2.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3. 의료기록사본 (x-선)발급	1통	3,000	4.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서 정한 수수료</u>	<p>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u>별표 2</u>에 따라 -----.</p> <p>[별표 2] ○ 증명 발급 수수료 (제12조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준</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1. 건강 진단서</td> <td>1통</td> <td>500</td> </tr> <tr> <td>2. 운전면허 적성검사</td> <td>1통</td> <td>500</td> </tr> <tr> <td>3. 의료기록사본 (x-선)발급</td> <td>1통</td> <td>3,000</td> </tr> <tr> <td>4. 증명서 재(추가)발급</td> <td>1통</td> <td>500</td> </tr> <tr> <td>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td> <td>1통</td> <td><u>3,000</u></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금 액	1. 건강 진단서	1통	500	2.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3. 의료기록사본 (x-선)발급	1통	3,000	4.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u>3,000</u>
구 분	기준	금 액																																			
1. 건강 진단서	1통	500																																			
2.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3. 의료기록사본 (x-선)발급	1통	3,000																																			
4.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u><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서 정한 수수료</u>																																			
구 분	기준	금 액																																			
1. 건강 진단서	1통	500																																			
2.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3. 의료기록사본 (x-선)발급	1통	3,000																																			
4.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u>3,000</u>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4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1.22.)(시행일 2024.11.23.)